

인천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0가단252641(본소), 2021가단245787(반소)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 용역비]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윤재민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만 원 및 그 중 21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7. 26.부터, 99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8. 4.부터 각 2020.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함)에게 51,576,872원 및 그 중 2,1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6. 1.부터 이 사건 본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30,576,872원에 대하여는 2020. 8. 13.부터 이 사건 본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사용할 물류업무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을 대금 3,000만 원[= 1차 계약금 1,200만 원(지급기일 : 계약 후 1주일 이내) + 2차 계약금 900만 원(지급기일 : 1차 계약금의 지급기일로부터 1달 이내) + 잔금 900만 원(지급기일 :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 부가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별지 1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2. 13. 1,200만 원, 2020. 3. 20. 500만 원, 2020. 6. 1. 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2019. 12. 13.자 1,200만 원은 1차 계약금조로 지급된 것이고, 2020. 3. 20.자 500만 원 및 2020. 6. 1.자 400만 원은 2차 계약금조로 지급된 것이다).

다. 피고는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원고의 직원인 C으로부터 여러 차례 수정 요청을 받아가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라. 피고가 2020. 6. 25. 및 2020. 6. 26. 원고의 직원인 C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을 완료하였으니 확인을 부탁하고 잔금 지급도 요청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C은 2020. 6. 27. 피고에게 ‘원고가 현재 검수 중이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20. 7. 15. 피고에게 별지 2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시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내지 20, 2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2020. 6. 25. 및 2020. 6. 26. 원고의 직원인 C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을 완료하였으니 확인을 부탁하고 잔금 지급도 요청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메시지는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4)항 상의 ‘검수 요청’으로 평가된다.¹⁾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2020.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시켰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2), (4)항 상의 ‘서면에 의한 검수 불인정 결과통보’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피고가 2020년 6월경까지 제작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4)항 상의 ‘제작 완료’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20년 6월경까지 제작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4)항 상의 ‘제작 완료’로 간주되거나,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을 완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예상기간은 3개월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무려 6~7개월 동안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을 수행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어떠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서류로써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하는 기능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기획서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하는 기능에 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있으나, 구체성이 상당히 부족했다. 원고의 임직원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하여 전문성이 없었으므로, 애당초 이 사건 프로그램이 어떠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서류로써 명확히 규정할 전문성이 없었다). 이 때문에 피고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원고의 직원인 C이 수정 요청을 하고, 피고가 그 수정 요청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C이 이미 수정 요청을 했던 그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사항에 대하여도 다시 수정 요청을 하는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③ 이 사건 계약서 제6조는 위 ①, ②항과 같은 부작용을 미리 예상하여 담긴 규정으로 평가된다. 즉 원고의 임직원은 애당초 이 사건 프로그램이 어떠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서류로써 명확히 규정할 전문성이 없었던 관계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어떠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서류로써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급인이 끝없이 수정 요청을 하면서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할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수급인이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수 요청을 통보하면, 도급인은 30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수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30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수정 요청을 한 사항만 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되고, 그 후에 도급인이 행한 새로운 수정 요청 사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되지 않는다[이 사건 계약서 제6조 (5)항 참조].

④ 이 사건 계약서 제6조는 위 ③항과 같은 취지로 담긴 규정이다. 따라서 피고가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수 요청을 통보하면, 원고는 단순히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검수 결과를 통보하면 아니 되고, 3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정을 요청한다고 특정하여 검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원고가 3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수정 요청을 한 사항만 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되고, 그 후에 원고가 행한 새로운 수정 요청 사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내용증명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전혀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있다.2) 그렇다면 이 사건 내용증명을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4)항 상의 ‘검수 결과 통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내용증명을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4)항 상의 ‘검수 결과 통보’라고 평가하더라도, 원고가 그 검수 결과 통보로써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수정 요청을 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2020. 6. 26. 원고에게 검수 요청을 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가 그때까지 제작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능만 피고가 제작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1차 계약금에 관한 부가세의 지급기일은 1차 계약금의 지급기일과 같고, 2차 계약금에 관한 부가세의 지급기일은 2차 계약금의 지급기일과 같으며, 잔금에 관한 부가세의 지급기일은 잔금의 지급기일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1차 계약금 1,200만 원의 부가세 120만 원, ② 2차

계약금 900만 원의 부가세 90만 원, ③ 잔금 900만 원, ④ 잔금 900만 원의 부가세 90만 원 합계 1,200만 원 및 그 중 위 ①의 120만 원과 위 ②의 90만 원의 합계 210만 원에 대하여는 그 각 지급기일의 다음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20. 7. 26.부터, 위 ③의 900만 원과 위 ④의 90만 원의 합계 99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검수 요청을 한 2020. 6. 26.부터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4)항 상의 30일이 경과한 2020. 7. 27.3) 을 기준으로 위 1의 가항의 1주일4) 이 경과한 2020. 8. 4.5) 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0.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행 지체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2,100만 원6)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2) 원고는 피고의 이행 지체로 28,576,872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28,576,8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28,576,872원의 계산식은 별지 3과 같다.

나. 판단

원고가 먼저 지급할 의무가 있는 1차 계약금 1,200만 원의 부가세 120만 원과 2차 계약금 900만 원의 부가세 90만 원의 지급을 먼저 지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게다가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위 120만 원 및 위 9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더라도 피고가 이행 지체에 빠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영석

별지 1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서

○ 이 계약은 "갑"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을" (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장소 관리
 용역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본 계약은 "갑"의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용역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이며 "갑"과 "을" 정확히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양해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프로그램 구축 >

구축종류			
프로그램 명			
제작예정기간	2019년 12월 1일 ~ 2020년 2월 29 일		
제작비용	기본비용	30,000,000 원 (variable)	내역
	추가비용	0 원 (variable)	내역
선박사항	별도 첨부		
초기 결제금액	0 원	잔금 1차 결제일	2019년 12월 1일
결제 잔금	1차	12,000,000 원	2차
	잔액		9,000,000 원
	(제작완료 시점인 솔루션 운영에서 디자인 및 운영관련 잔액 시)		

< 호스팅 및 운영장소 관리 >

관리기간	2019년 12 월 1일 ~ 2020년 11 월 30일 (제작기간에 따라 변동가능)		
호스팅 형태	완전호스팅 호스팅 서비스 제공		
관리비용	호스팅비용	연	무로 원
	유지비용	연	무로 원
참고사항	1. 호스팅 은 초기 1년은 무료지만 1년 이후에 임시별로 사용기간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주시며 합니다. 2. 디자인 유지/보수는 별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019 년 11 월 26 일

<갑> ○

사업자등록번호 :

안전관리자 서구

대표

<을>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관리자 서구 4층

대표

출 직

제1조 (계약의 목적)

- (1)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의뢰에 의해 "을"이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따른 제반 사항과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운영 유지 관리에 관련된 호스팅 및 기술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 (2) 계약서 작성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정원의 서면 합의 후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2조 (계약 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 (2) 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에는 상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제12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프로그램의 정의)

본 계약에서의 '프로그램'이란 인터넷 상에서 "갑"의 관련 내용을 기록한 내용대로 구현해낸 온라인 상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 (프로그램 관리의 정의)

- (1) 본 계약에서의 '운영 지원 관리'라 함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 중 발생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상의 기술적인 지변을 말한다.
 - (2) 프로그램 상의 기술적인 지변은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작업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운영 중 발생하는 프로그램 상의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지칭한다.
 - (3) 프로그램 상의 기술 지변은 다른 사항에서 재외하여 갑의 문제해결 요청 시 그 기술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기술지원 가능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 "갑"이 프로그램에 데이터 입력 시 기초적인 프로그램 기능 이외의 추가되는 기능이 작동되도록 프로그램 소스 언어와 유사한 추가 프로그램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여 발생하는 오류.
- "갑"이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 페이지를 임의로 수정하여 프로그램 상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제5조 (소유권 및 저작권)

- (1)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작 완료하여 "갑"에게 양도한 약정한 프로그램(개발 소스 포함) 및 도메인 하부의 홈페이지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 (2) 해당 프로그램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에게 도메인 및 서버 관리를 직접 하겠다고 요청할 시 "갑"에게 언제라도 통하는 시점에 이전해준다.
- (3) 프로그램 제작상 필요한 이미지 자료는 "갑" 또는 "을"이 저작권을 소유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만약 "갑" 또는 "을"이 저작권을 소유한 이미지 이외의 자료를 프로그램 제작상 이용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 자료 구입에 대한 별도 견적을 첨부하여 "갑"의 소유로 구입 후 제작을 완료한다.

제6조 (프로그램 제작)

"갑"이 의뢰한 당해 프로그램의 제작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자료의 제공

"갑"은 프로그램 기획에 사용될 내용(문자나 그림)을 "을"에게 제공하고, "갑"의 승인에 따라 "을"은 제작에 착수한다. 제작 기간의 착수 시점은 "갑"과 "을"이 합의한 날로부터 한다.

(2) 인도 및 준수

"물"은 제작된 프로그램을 게시 및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제작된 프로그램을 인수 일로부터 1주 이내에 준수하여 그 결과물 "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때 준수 방법은 본 계약 제7조에 의거 시행한다.

(3) 납품

"물"은 제작이 완료된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게시 및 "갑"에게 준수하게 한다.

(4) 저작권료 확인

"물"이 인도한 프로그램의 이상 없음을 "갑"이 확인하였을 때에 프로그램의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물"이 "갑"에게 프로그램 준수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당해 프로그램의 준수 결과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5) 추가 작업

본 계약 제6조 4항의 내용대로 프로그램의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된 시점 이후 "갑"이 "물"에게 프로그램에 관련된 추가 작업을 요청하는 것은 본 계약에 명시된 프로그램 제작 이외의 작업으로 "갑"과 "물"은 별도 협의 후 그 작업 여부를 결정한다.

(6) 무상지원

같은 사이트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식과 첨부함도 소요되는 작업일 경우 무료로 제공한다 (3회까지)

제7조 (준수 방법 및 하자 보수)

- (1) "물"이 당해 프로그램을 제작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를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2) 제작 완료된 당해 프로그램의 준수는 "갑"이 진행하고, "갑"은 당해 프로그램의 준수 결과물 "물"에게 통보하여 하자가 있는 곳은 "물"에게 통보하고 하자 부위는 "물"이 보수하여야 한다.
- (3) 하자 보수에 있어 그 기간은 "갑"과 "물"이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에 모험하기 위한 자료 제공에 의한 보수는 제6조 제3항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제8조 (비밀 유지)

- (1) "갑"과 "물"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또는 취득한 상대방의 기술상, 업무상의 비밀을 보강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2) 본 조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9조 (각종 제공 자료 및 내용의 권리)

- (1) 당해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갑"이 "물"에게 제공하는 각종 자료, 자료 및 내용물은 "갑"이 "물"에게 '무상 제공' 하는 것으로 하고 제공된 것들의 회수를 원할 때는 각종 자료, 자료 및 내용물이 제공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물"에게 회수 여부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2) "물"은 각종 자료, 자료 및 내용물을 "갑"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 제작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갑"은 "물"의 당해 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개발비용 다른 영종의 지불 원칙에 따라 지급한다.

- (1) 지불 원칙은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1차계약금을 지급하고, 한달 뒤 2차 계약금을 결제 최종적으로 제작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총 제작비의 나머지를 지급한다. .
- (2) "갑"이 "물"에게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1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물"은 해당 프로그램의 호스팅을 중지 할 수 있다.

제11조 (납기 및 지체 상금)

"물"이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갑"에게 서면 통보 후 1일당 2.5/100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을 "갑"에게 부과 징수한다.
(단, 본래지연 등 자연 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손해 배상)

"물"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등 본 계약상에 명시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갑"의 프로그램이 폐쇄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물"은 "갑"에게 손해 배상한다.

- (1) 본 손해 배상은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단된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인정한다.
- (2) 손해 배상액의 산출은 다음의 계산식을 통하여 산출하기로 한다.
 - 손해 배상액 산출식 : (총 매출액 / 운영일수) X (25 / 100) X 운영 중지 총일수
 - 프로그램의 총 운영 일수는 프로그램이 오픈 시점에서 운영이 정지된 시점까지의 총 일수로 한다
- (3) 본 계약 제4조 4항의 내용을 포함한 "갑"의 운영 상의 고실로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물"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4) 본 계약 10조 2항에 해당하는 문제로 발생하는 프로그램 폐쇄에 관련된 데이터 유실과 손실은 "물"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 (1) "갑"과 "물"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지정 요구를 "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2. "물"이 파산 신고를 받거나 해산, 청산,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
 3. "갑"의 합리 위반에 대한 "물"의 지정 요구를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4. 프로그램 계약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보류하는 경우 "갑"과 "물"은 서로에게 보류 원인과 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통보 및 합의해야 하며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 작업을 보류할 경우 본 계약서 상 명시된 계약 만료일의 1개월 초과 후 "갑"과 "물"은 서면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을 통구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6. "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프로그램 관리료 30일 이상 유지하지 않을 때.
 7.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합의된 프로그램 관리비용 지급을 1개월 이상 연체, 지급하지 않을 때.
- (2) 위 (1)항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갑" 또는 "물"의 서면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 "갑"이 제공한 원인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갑"은 "물"에게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 (4) "물"이 제공한 원인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물"은 "갑"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제12조 2항의 계산방식으로 "갑"에게 배상하도록 한다.

제14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전쟁, 폭동, 홍수, 지진, 정부 조치 등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의 지체에 대해서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관련 준할)

-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 및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의 수정 및 첨삭을 결정한다.
- (2) 본 계약과 관련하여거나 혹은 쌍방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이를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견이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경우 "갑"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 (신의 성실 및 준수)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을 수행해야 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한 계약 기간 및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지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17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계약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별지 2

법무법인 세주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20. 7. 13.

수 신 : 서울 서초구 전화번호 : 발 신 : 법무법인 세주로(주) 외 대리인)

변호사 윤재민(발신대표), 윤재필, 한영준, 이진영, 임재현

제 목 : 계약 해지 및 지체상금, 손해배상청구 예정 통보의 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귀하가 발신인과 2019. 11. 26. 체결한 '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서 (이하 '계약서'라고 합니다)'의 계약 내용 미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의사를 알려드립니다.

○ 해지 근거: 귀하가 발신인에게 납품한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발신인은 수 차례 프로그램의 이상 작동에 대해 알렸으며, 보완 및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귀하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제작완료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1, 4호, 동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이 무관본문 2020-07-13
에 의하여
 내법준무관본문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인천송도도도-01무관본문

3. 또한 계약서 제13조 제4항,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위 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현재 프로그램의 제작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귀하가 프로그램의 납기를 지체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계약서 제11조에 따라 본 서면 통보 후 1일당 25/100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을 정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귀하가 2020. 7. 1.에 발송한 내용증명과 관련하여서는 프로그램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위와 같이 프로그램의 완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잔금지급이 불가함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6. 이에 발신인은 마지막으로 귀하에게 []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향후 진행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내용증명을 받고 1주일 내로 법무법인 세주로 []로 귀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본 법무법인과 발신인은 이 사건 분쟁을 기본원칙과 객관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내용증명서에 대한 귀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며, 이 사건 분쟁의 원만하고 적절한 해결을 기대하겠습니다.

2020. 7. 13.

(주) []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주

변호사 윤재민(발신대표), 윤재필, 한형준, 이진영, 임재현

별지 3

라.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551조, 제390조에 따라 피고의 과실로 인해 프로그램 납기가 지체되고 있으므로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2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납기가 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일자에 설명회가 있으니 납기를 맞춰야 한다고 수차례 고지하였기에 피고는 원고의 해당 손해에 관하여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됩니다(갑제11호증 사진6).

또한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해 3건의 계약 체결이 무산되는 손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이행지체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4항,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1호증 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서).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576,872원(= 2019년도¹⁾ 총 매출액 307,394,471원 / 2020년 운영일수 199일 × 25/100 × 운영 중지 총 일수 74일²)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갑제12호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2020년도 총 매출액을 신정할 수 없어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 2020. 6. 1.부터 2020. 8. 13.까지의 총 74일입니다.

- 1) 원고도 위 메시지가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4)항 상의 ‘검수 요청’으로 평가된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
- 2)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작동이 되기는 한다.
- 3) 2020. 6. 26.의 초일을 불산입하여 2020. 6. 27.부터 30일째 되는 날은 2020. 7. 26.이고, 그 날을 경과하면 2020. 7. 27.이다.
- 4) 잔금 지급기일로서 1주일을 의미한다.
- 5) 위 2020. 7. 27.의 초일을 불산입하여 2020. 7. 28.부터 7일째 되는 날은 2020. 8. 3.이고, 그 날을 경과하면 2020. 8. 4.이다.
- 6)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2019. 12. 13.자 1,200만 원 + 2020. 3. 20. 500만 원 + 2020. 6. 1.자 400만 원